

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4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.
- 나.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 기금의 전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- 다.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,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 및 수당지급 규정에 대해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(안 제3조)
- 나.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 근거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- 다. 위원회 직무대행 규정 신설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(안 제12조, 제13조,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9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5. 6. 5. ~ 6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(☎2133 - 3854)

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기금의 전출)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인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

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
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의2(기금의 전출) ① 시장은 <u>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<u>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u></p> <p>① <u>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</u></p>	<p><u>제12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</u></p> <p><u>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</u></p>

위원장에게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,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
(생략)
<신설>

제15조(수당 등) 위원(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)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 주무관(02-2133-3854)